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발의자 : 이영준 의원

발의일 : 2021. 11.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관리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무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나. 휴가, 출장의 절차 및 업무 인계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3. 검토의견

- 본 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하남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으로,

-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됨.